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현국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현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박현국, 도기욱, 박용선,
김득환, 황병직, 김대일,
이종열, 남진복, 김명호,
박권현, 박영환, 이철구
의원(12명)

찬 성 자 : -명

1. 개정이유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 규정(안 제6조)
-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설치·기능·운영 규정(안 제9~11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안 제12~13조)
- 라. 용역실명제 규정(안 제14조)
- 마. 연구자 선정방식으로 공개경쟁 원칙 규정(안 제15조)
- 바. 용역결과의 공개·평가·활용 및 성과점검 규정(안 제17~2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반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요인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경상북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연구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정책연구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기술·디자인·전산·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동연구가 필요하여 타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7조(본예산 편성 전 심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본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심의의뢰) ① 주관부서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심의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계약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용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여부

6.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미래전략 기획단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정책연구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국장,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자 선정) 주관부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그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정책연구용역 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정책연구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9조(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연구활용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점검)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39조(연구과제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

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정책기획관실	제2조제2호	<문장 수정 필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	<문장 수정 필요> 다음 어느 하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호: 타 행정기관 => 다른 행정기관
	제9조	<문장 수정 필요> 제2항: 과반 => 과반수, 특정성별 => 특정 성별 제3항: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제11조제5항	<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 관계공무원 =>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부서 => 관계 기관 및 부서
	제12조	<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 제1항: 위원회 위원 => 위원회의 위원 제2항: 제1항 각호 => 제1항 각 호
	제13조	<문장 수정 필요> 그 의원의 => 그 위원을
	제14조	<문장 수정 필요> 제2항: 팀장, 주무관 => 팀장 및 주무관 제3항: 다음 => 다음 각 호의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1. 2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개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정책기획관)

□ 조례명 :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정책기획관		의견 없음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1조(수당 등) 규정에 따라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연간 개최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 예산담당관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 : 예산담당관-12643(2018.11.27.)

4.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황서경 (054-880-2111)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정책기획관-15376(2018.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은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다는 담당 부서 의견(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끝.

예산담당관 *박재구*

주무관 이홍작 예산총괄팀장 서정찬 예산담당관 박재구 전결 2018. 11. 27.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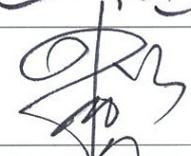
시행 예산담당관-12643 (2018. 11. 27.) 접수 정책기획관-15535 (2018. 11. 27.)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156

전화번호 054-880-8513 팩스번호 053-950-2159 / redjak@korea.kr / 비공개(5)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현숙		
노기옥	노기옥	
백용선		
김득환	김득환	
김영애		
김대일		
이수연	이수연	
김영희		
김명호	김명호	
박찬현		
박영환		
이철구		